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[별지 제102호서식]

열람·복사 불허가 또는 사용 목적 제한 등 통지서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주소 (전화번호:)	

불허가·사용 목적 제한·조건부 허가 사유(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2제2항 및 제59조의2제2항)	
①	국가의 안전보장, 선량한 풍속, 공공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
②	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·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
③	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
④	피의자의 개선이나 갱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
⑤	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(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영업비밀을 말합니다)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
⑥	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음
⑦	그 밖의 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 허가 사유

결정 내용	

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2(제22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) 및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귀하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허가·사용 목적 제한 또는 조건부 허가함을 통지합니다.

년 월 일

※ 문의: (담당부서 및 담당자)

(전화번호)

(○○지방)중대범죄수사청장 직인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